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관련 (3)

2015. 9. 15. 국제인권법연구회

1. 기존 진행 경과

▣ 2015. 7. 7. 소모임 제안

- ○○지법 박○○ 판사(○○기)가 소모임(분과위원회) 형태로 제안

▣ 2015. 7. 21.자 첫 예비모임

- 참석자 12인 ⇒ 임원 선출 : 분과위원장(대표) 김○○, 총무 박○○, 김○○ / 참석자 중 최연장자는 ○○지원 ○○기 이○○ 부장판사
- 논의 주제 : 향후 논의 대상 주제의 선정

▣ 2015. 8. 11.자 두 번째 예비모임

- 참석자 16인 ⇒ ① 소모임 명칭을 '사법제도 소모임'에서 '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'(약칭 "인사모")으로 변경 ② 제2총무 박○○ 판사 외에, 제1총무 김○○ 부장판사가 빠지는 대신 박○○ 판사가 제1총무를 맡기로 함
- 논의 주제 : 상고법원
- 기조발표 : 이○○ 부장판사(찬성론), 이○○ 부장판사(반대론)
- 외부로의 의견 표출 : 커뮤니티 내에 논의된 내용을 올리기로 함 ⇒ 2015. 8. 19. 박○○ 판사가 커뮤니티에 경과보고 공지
  - 상고법원 찬반 각 논거를 설시한 후, 「토론을 마친 뒤 참가자들의 투표 결과 다수가 '현행 상고제도를 유지하면서 심리불속행제도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자'는 측면에서 현재의 상고법원 논의에 회의적이었습니다.」라고 설시
  - 「향후 1년 기간에 해당하는 주제의 발굴과 연구 담당자 선정을 통하여 외부 발표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발표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정하였다.」고 향후 계획을 설시

2. 2015. 9. 14.자 정식 첫 모임

▣ 첫 모임에 앞선 연구회장 접촉

- 2015. 9. 9. 회장 주재 인사모 저녁식사 ⇒ 김○○(대표), 박○○(대표), 이○○(최연장자), 이○○
- 회장 발언 요지 : 인사모의 커뮤니티 外 활동 권유, 모임 결과 공지의 문제점 지적
  - 人事 등 사법제도 논의가 연구회 소모임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(소극)
  - 인사모 결과 내용, 특히 민감한 내용의 커뮤니티 내 게시가 적절한지 여부 (소극)
  - 법관으로서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 제도 개선을 꾀하자는 취지의 소모임인 '인사모' 의 운영 개선 필요성 : 사법행정 책임자들의 제도 개선 및 소통의 노력
  -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체를 생각하여야 할 필요성의 강조 : 커뮤니티 지원의 증대, 국제인권 관련 해외 기관에의 파견, 국제인권 관련 회의 출장, 커뮤니티 내 인권자료실의 코트넷 상설화 등 연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
- 반응
  - 회장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고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고 함
  - 일단 공지 문제는 dry하게 간단히 결과만 공지하는 것으로 하고, 공지문 작성도 박○○ 판사가 아닌 모임 참석 젊은 법관들이 논의해서 작성하기로 하였다고 함
- 향후 반응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봄

▣ 첫 모임의 내용

- 참석자
  - 기존 예비모임 참석자들 대부분을 포함하여 20여 명 참석

- 그 중 지방법원 배석판사 4인, 고등법원 배석판사 1인 포함됨

● 논의 주제 : 바람직한 합의부의 조직과 운용

- ‘업무적 측면’ 및 ‘생활적 측면’으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하였으나, ‘업무적 측면’ 논의가 11시까지 이어져 ‘생활적 측면’은 차회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고 함

● 기조발표 : 배석판사 2인 = 문○○(중앙, 37기), 홍○○(안양, 38기) / 부장판사 2인 = 이○○(수원, 27기), 정○○(연수원, 27기)

● 배석판사들 의견

- 고법의 대등재판부 판사와 비슷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고 함

- 예컨대, 사건 합의에서 주심 배석판사의 의견 존중, 실질적 3인 합의 및 주심 배석판사와의 사이에 상당 수준의 대등 합의의 필요성,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는 부장판사 업무 태도의 시정 필요성, 배석판사를 재판연구원처럼 대하는 부장판사 태도의 시정 필요성 등

● 부장판사들 의견 : ‘실질적 3인 합의’ 내지 ‘주심 배석판사와의 대등 합의’의 현실적 어려움 등 부장판사들의 입장을 설명하였다고 함

● 뒷풀이 : 새벽 2시 넘어 마쳤고, 김○○ 고등부장, 이○○ 부장판사, 이○○ 판사 등이 뒤늦게 합류하였다고 함

▣ 제2회 모임 예정

● 일시 : 2015. 10. 19.

● 논의 주제 : 원래는 「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」이었으나, 첫 모임에서 「합의부의 생활적 측면」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2회 모임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음

[끝]